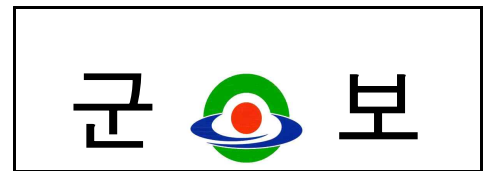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65호 2022. 5. 2.(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98호)
-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99호)

고 시

- 매창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2-4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8호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 포함) 지원 사업
3.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4.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등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가.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예천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위생업소, 위생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 용어 정의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제3조 및 제4조)

- 지원대상 : 예천군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 지원사업 : 시설환경 개선, (홍보)물품 지원,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육성·지원, 식중독 예방 지원,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 등에 관한 사업

다. 지도·감독 및 준용(제5조 및 제6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단체에 사업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름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99호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및 제2조)

나. 보조금 지원 내용(제3조)

-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
-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 그 밖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재정 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제4조)

-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 비밀 준수의 의무(제5조)

- 응급의료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

마. 지도·감독(제6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지원의 취소(제7조)

-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천군 고시 제 2022-49호

매창1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인 매창1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일

예 천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매창1리 마을만들기
2. 위 치 : 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사 업 비 : 500백만원
5.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안길 정비, 노인회관 리모델링
 - 지역역량강화 : 주민문화교육, 경관교육 등
6.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농촌활력과장)
7.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2년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054-650-7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